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방민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1.

발 의 자 : 방민수 · 진선미 · 박원서 ·
서희원 · 박희자 · 김영민 ·
김연후 · 이승일 · 한경혜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규정(안 제5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
다. 합 의 : 자치안전과(도시안전팀) 협의

다. 입법예고(2019. 2. 12. ~ 2. 16.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를 각각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로 하고,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(방연마스크 비치)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 대피(피난)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59조</u> ~ <u>제61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59조(방연마스크 비치)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(피난)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60조</u> ~ <u>제62조</u> (현행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와 같음)</p>